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7. 21 선고 2022가단11228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유병연, 김정원

피 고 1. 주식회사 B

2. C

3. D

변 론 종 결 2022. 7. 7.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6,816,350원 및 그 중 78,825,583원에 대하여 2022. 4.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D에 대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판사 김철환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피고 ㈜B, 피고 C, 피고 D에 대하여 양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이고, 피고 ㈜B, 피고 C, 피고 D는 원고에게 위 양수금을 지급하여야 할 '채무자'이며, 피고 E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피고 C의 상속지분을 분할협의에 의하여 취득한 약외의 '수익자'입니다.

2. 이 사건의 발생 경위

가. 양수금채권(피보전채권)의 존재

소의 주식회사 F은 2013. 3. 29. 피고 주식회사 B에게 금 1억 원을 대출기간 60개월, 대출금리 연 11.9%로 하여 대여해 주었고, 당시 피고 C, 피고 D는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습니다(갑 제1호증 대출약정서 참조).

그런데 피고 주식회사 B는 위 채무의 이자 등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소의 주식회사 G(주식회사 F의 변경된 상호, 갑 1-2 등기사항일부증명서)은 2020. 11. 23. 원고에게 B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하였습니다(갑 제2호증의 1, 2 각 자산양수도계약서, 채권양도 통지서 참조).

따라서 위 미지급 양수금과 관련하여, 피고 ㈜B, 피고 C, 피고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86,816,350원 및 그 중 금 78,825,583원에

대하여 2022. 4.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1.9%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갑 제3호증 재권제산서 참조).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의 존재

피고 C의 아버지는 소의 H이었는데, 위 H은 2002. 3. 19. 사망하였고, 피고 C은 위 H의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상속할 수 있었음에도(위 H의 상속인들 및 C의 상속지분)에 대해서는 주민센터에 가족관계 등에 대한 사실조회촉탁 신청을 통해 구체적으로 밝히겠습니다),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서 피고 E에게 자신의 지분을 모두 넘겨버려,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9항 부동산의 경우 2017. 4. 28.에, 같은 목록 제10항 부동산의 경우 2018. 9. 21.에 각 피고 E의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종료되었습니다(갑 제4호증의 1 내지 10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

위 부동산 중 '건물'의 경우(갑 4-4), 2017. 4. 28. 제83034호로 피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종료되었으나, 상속등기가 종료된 토지와 동기경료일(2017. 4. 28.)이 동일하고 접수번호가 제83033호 및 제83034호로 연속되어 있습니다(갑 4-1, -2, -3, -5, -6, -7, -8, -9).

특히 건축물대장에는 사용승인일이 1938. 3. 26.로, 2005년도 건축물대장

정비사업에 외거 미등기로 소유자 현황 정비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습니다(갑 제5호증 건축물대장 참조).

따라서 위 건물의 경우도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부터 존재하였던 상속재산인데, 다만 피상속인의 생전 등기가 종료되지 않아 부득이 피고 E가 상속등기를 종료하지 않고 보존등기를 종료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는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위 부동산 중 채무자인 피고 C의 상속지분에 해당되는 부분은 피고 C의 재산인데, 피고 C은 분할협의를 통해 위 지분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여 그 무자력의 상태를 더 심화시켰는바, 위 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대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은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자신이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하는 바(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51908 판결 등 참조),

수익자인 피고 E는 자신이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무

(1) 따라서 피고 C, 피고 E 사이의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고, 피고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마땅합니다.

원고는 전술하였던 증거신청을 통해 사해행위로서 취소되고 반환되어야 하는 피고 C의 상속지분이 얼마인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향후 청구취지를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2) 원물반환

별지 목록 제3, 4항 부동산의 경우 특별히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가 아니므로(갑 제4호증의 3, 4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물반환'청구를 하고자 합니다.

대법원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있어서 취소 목적 부동산의 등기 명의물 수익자로부터 채무자 앞으로 복귀시키고자 하는 경우,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그 등

기의 탈소를 구하는 외에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도 허용되어야 하는바, 이러한 법리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있어서 취소 목적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수익자로부터 채무자 앞으로 부귀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 명의의 등기의 탈소를 구하는 대신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도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참조).

따라서 위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원고는 위 부동산에 대하여는 피고 E가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피고 C에게 전경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3) 가액반환

별지 목록 제1, 2, 5, 6, 7, 8, 9항 부동산의 경우, 사해행위 이후인 ① 2019. 2. 21. ‘채권최고액 1억 4,040만 원’, ‘근저당권자 I 조합’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② 2019. 10. 24. ‘채권최고액 4,160만 원’, ‘근저당권자 I 조합’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갑 제4호증의 2, 5, 6, 7, 8, 9 각 참조).

또한 목록 제10항 부동산의 경우, 사해행위(2018. 9. 21.) 이후인 2018. 11. 19. 소의 J과 사이에 교환계약이 체결되어, 같은 달 27. J 명의의 이전등기가 종료되었고, 이후 K에게 증여되었습니다.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을 구함에 있어 사해행위 후 제3자가 목적물에 관하여 저당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원물반환뿐만 아니라 가액반환청구도 모두 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1. 02. 09. 선고 2000다 57139 판결 참조), 원고는 가액반환청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목록 1, 2, 5, 6, 7, 8, 9항 부동산).

10항 부동산의 경우, 사해행위 이후 제3자에게 이전등기가 종료되어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물반환이 불가하므로, 원고는 가액반환청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전술하였던 2022. 4. 1.까지의 원리금인 금 190,109,183원을 한도로 이 사건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반환'청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